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유만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분의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찬성 연서를 해 주신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이 매년 조성되고 있습니다. 기부채납 공원은 조성 후 공원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공원관리청이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 현재 점검 항목에 토양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기부채납 공원에서의 수목 생육이 불량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에 준공시 토양상태를

확인하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공원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, 관리 이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
안 제31조제1항을 신설하여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·녹지에 대하여 계획의 이행을 확인하고,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원·녹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.

신설된 안 제31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원·녹지 공간의 배치, 시설물·식재 형태, 위치, 성능 등의 적정성 및 설계·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사항을

안 제31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원·녹지 조성 시 사용된 성토 재료 등 자재(건설폐기물 등 환경오염 유발 물질의 포함여부 등)에 대한 검사를

안 제31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원·녹지의 토양 상태(생육 적

합성 등)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안 제31조제2항을 신설하여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, 소유권 이전, 유지관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기부채납 공원에서의 수목생육 환경이 양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